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2016년 2월 11일 제정
2017년 1월 25일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 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회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임전결”(이하 “전결”이라 한다)이란 소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본회”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를 말한다.
4. “회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회장, 사무처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과 같다.

1. 회장의 결재사항
 -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회장의 전결사항
 -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및 조정
 -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다.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 라. 대외 협력사업 및 일반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 수행

3. 사무처장의 전결사항

-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 나. 본회의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 다. 일반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 라.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팀장의 전결사항

-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다. 소관업무의 사후관리
- 라. 일반인·허가사항의 처리
- 마. 법규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본회의 단위사무별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 ③ [별표 1]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 2. 그 업무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사항
-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부재중일 때 또는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대결로 처리할 수 없다.
- ③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결재위반여부 확인)

사무처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결재 여부를 확인 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등의 표시) 전결, 대결, 후열 등의 표시는 기안용지에 전결, 대결, 후열권자가 서명하고 서명하는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시의 체육담당부서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 등 중요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체육담당부서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1.25.>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구 분	업무내용	전결권자			회장
		팀장	처장	수석부회장	
인사관계 (지도자포함)	기구개편, 정원조정				<input type="radio"/>
	직원의 채용 및 승진(7급 이상)				<input type="radio"/>
	직원의 채용 및 승진 (8급 이하, 지도자)			<input type="radio"/>	
	근무평정 및 정기승급			<input type="radio"/>	
	인사기록 관리	<input type="radio"/>			
	인사발령		<input type="radio"/>		
복무	국내출장, 휴가 조퇴, 초과근무	사무처장 팀장이하		<input type="radio"/>	
	국외출장	사무처장 사무처직원		<input type="radio"/>	
	휴가계획 수립·시행		<input type="radio"/>		
	직원의 복무관리		<input type="radio"/>		
	상훈		<input type="radio"/>		
	사무처장			<input type="radio"/>	
	팀장이하		<input type="radio"/>		
예산편성 및 결산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 수립				<input type="radio"/>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input type="radio"/>		
	세입·세출결산안 편성		<input type="radio"/>		
	예산의 변경 및 조정 통제			<input type="radio"/>	
	보조금의 정산		<input type="radio"/>		
세출예산 집행품의	건당 2억원 이상				<input type="radio"/>
	건당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input type="radio"/>	
	건당 5천만원 미만		<input type="radio"/>		
	회원단체 등 보조금 지출		<input type="radio"/>		
지출원인행위			<input type="radio"/>		
수입·지출 결의	수입 결의		<input type="radio"/>		
	지출 결의		<input type="radio"/>		

구 분	업무 내용	전결권자			회장
		팀장	처장	수석 부회장	
	각종 기금 관리 운영		○		
	세입세출 일계표 잔고 확인	○			
	회원단체 찬조금 영수 및 교부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정산보고		○		
재산관리	재산의 취득·처분			○	
	재물조사 및 관리		○		
	차량관리 및 운영	○			
복리후생	각종 보험업무 관리		○		
	재해보상 관리		○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안건 및 결의사항					○
임원인준	체육회 임원 인준업무			○	
	회원단체 임원인준		○		
	읍·면·동 체육회 임원인준		○		
위원회 등 운영	위원 위촉 및 해임				○
	위원회 운영(안건)			○	
	계획의 시행		○		
	상임위원회 운영			○	
	전무이사 회의		○		
	회원단체 회의		○		
회원단체 관리	회원단체 가입·탈퇴			○	
	소관 위원회 운영			○	
	회원단체 육성 및 지원		○		
	보조사업 집행점검 및 확인		○		
	체육인 포상 및 징계처리		○		
	회원단체 내부분쟁 조정		○		
	회원단체 출납원 임명		○		

구 分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회 장
		팀 장	처 장	수 석 부회장	
회원단체 ·개최	참가 및 개최 지원계획 수립			<input type="radio"/>	
	종목별 대회참가 및 개최 격려			<input type="radio"/>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본계획 수립				<input type="radio"/>
	세부실행계획 수립		<input type="radio"/>		
	계획의 시행		<input type="radio"/>		
	추진결과 분석·평가		<input type="radio"/>		
유관기관 협 조	정책사항				<input type="radio"/>
	중요사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정 등 제도정비	규약 · 규정의 제·개정				<input type="radio"/>
	제안 및 제도개선		<input type="radio"/>		
일반서무	신원조회 및 제증명 발급		<input type="radio"/>		
	비품관리 및 체육회관 관리	<input type="radio"/>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정		<input type="radio"/>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무	<input type="radio"/>			
	사무인계·인수	6급이상		<input type="radio"/>	
	보고서 처리	7급이하	<input type="radio"/>		
	신·홈페이지·보안·감사관리		<input type="radio"/>		
	직인관리		<input type="radio"/>		
	행사관리 및 업무보고		<input type="radio"/>		
	문서의 통제 및 수발·보존		<input type="radio"/>		
민원, 분쟁 소송	진정서 및 민원 처리		<input type="radio"/>		
	제소, 피소, 판결사항			<input type="radio"/>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국제체육 행사 및 교류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input type="radio"/>
	계획의 시행		<input type="radio"/>		
체육주간 행사	행사계획 수립			<input type="radio"/>	
	계획의 시행		<input type="radio"/>		

구 분	업무 내용	전결권자			회장
		팀장	처장	수석 부회장	
직장·학교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	
	육성 및 지원		○		
시민 체육대회	기본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대회운영비 보조 지원계획		○		
	계획의 시행		○		
전국체전 · 소년체전 · 생활체육 대축전	기본계획 수립				○
	선발전		○		
	강화훈련	강화훈련계획		○	
		훈련시행		○	
		및 용품지원		○	
		훈련비 지원		○	
		경기력향상에 관한 종합분석·평가보고			○
	선수단 출전	출전계획		○	
		시행	○		
		참가신청	○		
		전산입력	○		
		ID카드 발급	○		
		숙소선정	○		
		선수관리 및 격려	○		
		경기장 질서확립	○		
	결단식 해단식	기본계획		○	
		시행	○		
		심사 및 표창	○		

구 分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회 장
		팀 장	처 장	수 석 부회장	
생활체육 진 흥	행사·프로그램·교실운영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행사참가 보조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관리 운영		○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육성사업 지 원	기본 계획 수립			○	
	세부시행, 사업결과, 사업변경 승인		○		
	동호인클럽 및 동호인 통계관리		○		
시민체력 인증센터 위탁관리	센터직원 배치·관리 운영		○		
	프로그램 운영 등		○		